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3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3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3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09,091,139	292,767,428	16,323,711	5.5
지 방 세	57,835,000	53,673,000	4,162,000	7.7
세 외 수 입	69,591,341	63,836,959	5,754,382	9.0
지방교부세	45,284,700	42,146,000	3,138,700	7.4
지방양여금	27,081,692	27,081,692	0	-
조정교부금	29,479,200	25,959,200	3,520,000	13.5
보 조 금	74,819,206	75,070,577	△251,371	△0.3
지 방 체	5,000,000	5,000,000	0	-

II. 세입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총 계 ----- 16,323,711천 원

○ 지방세수입 ----- 4,162,000천 원

• 지방세 ----- 4,162,000천 원

- 보통세 3,134,000천 원

• 주민세 2,190,000천 원

• 재산세 321,000천 원

• 농업소득세 9,000천 원

• 도축세 △44,000천 원

• 종합토지세 658,000천 원

- 목적세 1,028,000천 원

• 도시계획세 908,000천 원

• 사업소세 120,000천 원

○ 세외수입 ----- 5,754,382천 원

• 경상적세외수입 ----- △ 45,690천 원

- 국유재산임대료(회계과, 농축산과 소관) 19,810천 원

- 기타사용료(시청주차장 사용료) 31,200천 원

- 사업장생산수입(골재채취 판매수입) △596,700천 원

- 징수교부금수입(도세징수교부금 수입) 500,000천 원

• 임시적세외수입 ----- 5,800,072천 원

- 국유재산매각수입 226,847천 원

- 공유재산매각수입 565,650천원
※시유지매각수입 339,114, 도유재산 매각수입 226,536
- 자치단체간 부담금 10,975천원
- 일반부담금 4,500,000천원
- 과태료수입(건축과, 교통행정과) 185,000천원
- 기타잡수입 59,600천원
- 과년도수입 252,000천원

○ 지방교부세 ----- 3,138,700천원

- 보통교부세 1,434,000천원
- 특별교부세 1,704,700천원

※ 재해정보시스템 강화 4,700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로 개설공사 1,200,000

선유~문산이고간 도로확·포장 공사 500,000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3,520,000천원

- 일반재정보전금 증액분 1,720,000천원
- 시책추진 재정보전금(2건) 1,800,000천원

○ 보조금 ----- △251,371천원

- 국고보조금 추가분(21건) △63,878천원
※ 증액분 16건(1,002,098천원), 감액분 5건(1,065,976천원)
- 시·도비보조금 추가분(37건) △187,493천원
※ 국고분 [증액분 11건(249,749천원), 감액분 6건(654,365천원)]
※ 도비분 [증액분 18건(222,873천원), 감액분 2건(5,750천원)]

Ⅲ. 검토의견

- 금번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09,091,139천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 292,767,428천원보다 16,323,71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하여 5.5%, 당초 본 예산대비 28.5%늘어난 규모임.
- 추정세입(재원) 예산액 16,323,711천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4,162,000천원(25.5%) 세외수입 5,754,382천원(35.2%), 지방교부세 3,138,700천원(19.2%) 조정교부금 3,520,000천원(21.6%), 보조금(국도비) △251,371천원(△1.5%)으로 편성되었음.
- 금번 추경예산액 16,323,711천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6,658,700천원(40.8%)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9,916,382(60.7%)이며 보조금 251,371천원(1.5%)은 감액되었음.
-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체적으로 4,162,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민세 2,190,000천원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관내 법인의 증가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징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 종합토지세 658,000천원은 개별공시지가와 적용률 인상 등에 따라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세 908,000천원이 대폭 증액 계상된 것은 지난 2003년 5월 제70회 임시회에서 「파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 의결에 따라 파주시도시계획구역이 변경(추가)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늘어남으로써 도시계획세 수입이 증가한 것임.
- 이외에도 재산세 321,000천원이 증액되고 도축세는 44,000천원은 감액되었으며 사업소세 12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지방세 세입재원의 변동폭이 큰 것은 당초 지방세 세입 추계를 정확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대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도축세와 일부 수수료와 같이 세입예산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 감액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연중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됨.
- 세외수입 중 골재채취 판매수입 596,700천원이 대폭 감액 계상된 것은 당초 본예산에 1,195,000천원을 계상하였다가 지난 제1차 추경에서 2,945,000천원을 증액 편성한바 있고 다시 금번 제2차 추경에서 596,7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이같은 사유는 1차 추경 시에는 마정지구와 동파지구 2개소에서 생산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발표 등 건설경기 호전으로 판매단가를 인상하여 판매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나 잦은 비와 골재채취 기기고장,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 사례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운동을 위해 잘못된 사례로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판매수입의 정확한 추계와 예측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일반부담금 중 시범적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부담금 3,600,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지역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적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파주시와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간의 협약에 따라 도시계획수립 및 수치지도 작성 등 용역수립 소요사업비를 토공과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2,100,000천원이 반영된 바 있음.
- 지방교부세는 3,138,700천원으로 보통교부세 1,434,000천원과 제세정보시스템강화 및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로 개설공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747,000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제정보전금 3,520,000천원은 일반제정보전금 1,720,000천원과 장단콩 축제장 설치 등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800,000천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음.

○ 보조금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국도비)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국비), 지역특화 상사업비(국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국비)등이 추가(변경) 내시되어 대폭 증액 계상되었으나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국도비)가 전액 감액 편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52,37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되었던 국비 964,641천원과 도비 578,929천원이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금촌 새말(15통)지역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주공과 주민대표간에 보상문제 등 협의가 타결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사업비를 전액 반납키 위해 감액편성된 것임.

○ **이상과 같이**,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2회 추정안의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제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의 추가(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그러나, 일부예산의 경우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해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서 다시 감액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이 요구되며 지방세와 수수료의 경우도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